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입장권 판매자 등의 부정거래 방지 조치의무, 부정거래 확인에 필요한 자료범위, 신고기관의 지정, 과징금·포상금 및 과태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입장권 판매자 등의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안 제2조의1)
- 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범위(안 제2조의2)
- 다.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안 제2조의3)
- 라.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안 제2조의4 및 별표 6)
- 마. 입장권등 부정거래심사위원회(안 제2조의5)
- 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안 제44조의4)
- 사.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5)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협의 예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조의1부터 제2조의5까지 및 제4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입장권판매자 등의 필요한 조치) 법 제6조의2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입장권등을 현장 판매하는 경우

입장권등을 경기장 현장에서 판매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장시에 입장권 등의 소지자에 대하여 본인확인하는 조치

2.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현장 판매의 경우 제외)

가. 이용자가 입장권등을 거래할 때 본인확인하는 조치. 다만, 회원
가입시에 본인확인을 하고 본인 계정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다.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하는 경우 삭제, 접속차단 등의 유통제한
조치와 관련 법률에 따라 과징금부과 또는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미리 알리는 조치

라.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 및

수사기관이 부정구매(공정한 구입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판매나 대여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정보로 판단하여 삭제요청한 경우 24시간 이내(영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

3. 통신판매중개업자

가. 제2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조치

나. 제2호 나목에 따라 신고, 삭제요청된 정보가 부정구매 또는 부정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조치

다.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이 부정구매(공정한 구입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판매나 대여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정보로 판단하여 삭제요청하거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 요건을 제외한다)를 청약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 판단하여 삭제요청을 하는 경우 24시간 이내(영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해당 입장권등이 사용될 일자와의 근접성, 고액의 부정한 판매금액의 청약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시간 이내에 10일 이상 30일 이내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조치를 하여야한다.

라. 다목에 따라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이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관련 정보로 삭제 요청을 한 정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정보가 이용자가 검색어와 그 정보의 제목·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 등으로 식별·검색할 수 없도록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

제2조의2(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자료) 법 제6조의3제3항 제5호의 “그 밖에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최초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의 게시자 정보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
2. 특정 사용자명이나 IP 주소에서 반복적으로 입장권등의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구매하는 청약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의 게시자 정보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
3. 부정판매 청약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의 게시자 정보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
4. 제2조의1 제2호라목 또는 제3호 다목에 따른 신고기관의 삭제요청에 대한 처리결과와 제3호 나목에 따른 삭제 조치결과 및 제3호 라목에 따른 노출 제한 조치 결과

제2조의3(신고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기관으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② 신고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신고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고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4(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와 같다.

②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제2조의5에 따른 입장권등부정거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금액과 과징금의 금

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부정판매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5(입장권등부정거래심사위원회)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입장권등부정거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4조의4(신고포상금)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제1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 5천만원 이내
2.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 해당 부정판매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액의 100분의 50 이내

③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수사기관이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인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이 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제2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항부터 너항’까지를 각각 ‘라항~더항’으로 한다. 현행 다항의 ‘법 제55조제2항제1호’를 ‘법 제55조제2항제1호의2’로 한다.

다. 법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자	법 제55조제2 항제1호	500
---	---------------------	-----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과징금 부과기준은 2회 이상 부정판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1회째의 부정판매금액이 정가의 2배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 나. 1매의 입장권등에 대한 부정판매 행위를 1회의 부정판매로 한다.
- 다. 부정판매의 판매금액은 실제 판매되어 구매자가 구입한 금액으로 한다.
- 라. 일정한 기간 내에 수차례의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권등(이하 “기간권”이라 한다)은 해당 입장권등의 판매를 통하여 입장할 수 있는 최대 운동경기의 수를 부정판매 횟수로 한다.
 - 1) 기간권으로 입장할 수 있는 기간 중에서 특정 운동경기에 입장할 수 있는 권한만을 판매한 경우(특정 일자에 복수의 운동경기에 입장할 수 있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기간권의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판매한 기간권의 권한으로 입장가능한 운동경기의 수를 해당 기간권으로 입장할 수 있는 최대 운동경기의 수로 나눈 값을 곱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하고 실제 판매된 금액을 판매금액으로 한다.
 - 2) 동일한 기간권을 특정 기간이나 특정 운동경기 별로 분할하여 입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 구매자에게 판매하거나 특정 기간이나 특정 운동경기 별로 순차적으로 복수의 구매자에게 재판매한 경우(구매자가 다시 재판매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각의 판매행위를 부정판매로 본다.
- 마. 자신의 계정으로 구매한 입장권등에 수수료를 부가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입장권등의 정가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판매금액으로 하며, 특정인의 의뢰를 받고 그 특정인의 계정으로 입장권등을 구매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입장권등의 정가와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판매금액으로 한다.
- 바. 특정 계정으로 구입한 입장권등을 구입취소 등의 방법으로 환불하여 다른 계정으로 입장권등을 구입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구입취소한 입장권등의 정가와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판매금액으로 한다.
- 사. 부정판매자가 직전 판매자(최초 판매자를 제외한다)로부터 구입한 가격과 직전 판매자를 특정할수 있는 정보를 증빙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구입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2. 세부 부과기준

가.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의 5배로 한다.

나. 제1호가목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의 표와 같다.

판매금액 부정 판매횟수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회~4회	판매금액 × 10	판매금액 × 20	판매금액 × 30
5회~9회	판매금액 × 20	판매금액 × 30	판매금액 × 40
10회 이상	판매금액 × 50	판매금액 × 50	판매금액 × 50

다. 가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도 2회째의 부정판매 횟수부터는 나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조의1(입장권판매자 등의 필요한 조치)</u> <u>법 제6조의2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u> <u>1. 입장권등을 현장 판매하는 경우</u> <u>입장권등을 경기장 현장에서 판매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장에 입장권 등의 소지자에 대하여 본인 확인하는 조치</u> <u>2.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현장 판매의 경우 제외)</u> 가. <u>이용자가 입장권등을 거래할 때 본인 확인하는 조치. 다만, 회원가입시에 본인확인을 하고 본인 계정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나. <u>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u> 다. <u>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하는 경우 삭제, 접속차단 등의 유통제한 조치와 관련 법률에 따라 과징금부과 또는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u>

신망을 통하여 미리 알리는 조치
라.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기관
(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 및 수사
기관이 부정구매(공정한 구입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판매
나 대여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정
보로 판단하여 삭제요청한 경우 24시
간 이내(영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에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

3. 통신판매중개업자

가. 제2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조치
나. 제2호 나목에 따라 신고, 삭제요청
된 정보가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삭
제하는 조치
다.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이 부정구매
(공정한 구입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
하는 프로그램의 판매나 대여를 포함
한다)에 해당하는 정보로 판단하여
삭제요청하거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 요건을 제외한다)를 청약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 판단
하여 삭제요청을 하는 경우 24시간
이내(영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해당 입장권등이 사용될 일자와의 근접성, 고액의 부정판매금액의 청약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시간 이내에 10일 이상 30일 이내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조치를 하여야한다.

라. 다목에 따라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이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관련 정보로 삭제 요청을 한 정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정보가 이용자가 검색어와 그 정보의 제목·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 등으로 식별·검색할 수 없도록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

<신 설>

제2조의2(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자료) 법 제6조의3제3항 제5호의 “그 밖에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최초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과정을

<신 설>

우회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의 게시자 정보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

2. 특정 사용자명이나 IP 주소에서 반복적으로 입장권등의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구매하는 청약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의 게시자 정보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

3. 부정판매 청약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의 게시자 정보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

4. 제2조의 제2호라목 또는 제3호 다목에 따른 신고기관의 삭제요청에 대한 처리결과와 제3호 나목에 따른 삭제 조치결과 및 제3호 라목에 따른 노출 제한 조치 결과

제2조의3(신고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기관으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추
것

② 신고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신

<신 설>

고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고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4(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와 같다.

②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

<신 설>

<신 설>

과하려면 제2조의5에 따른 입장권등부정거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금액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부정판매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5(입장권등부정거래심사위원회)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입장권등부정거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4조의4(신고포상금)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제1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 5천만원 이내

2.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 해당 부정판매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액의 100분의 50 이내

③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수사기관이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인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이 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3153